The Factor of National Planning for Public Library

● 大會主題發表論文

學校圖書館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

李 正 熙
京畿高校司書敎師

"學校圖書館 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이란 어마어마한 내용을 圖書館에 대한 素養도 不足한 데다가 法律이나 政策에 대한 知識은 전혀 門外漢인 本人이 주제발표를 한다는 자체가 주제넘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學校圖書館에 關한 諸般 問題點을 제나름대로 분석해본다면 첫째 運營管理問題로 ① 資料(學校別 비치도서수·유별분포에 관한 문제 등) ② 圖書整理(분류기호·저자기호·주제별 등) ③ 施設기준 ④ 職員(司書敎師·學校司書(=조무원)) ⑤ 豫算 ⑥ 분실폐기문제 ⑦ 반납 대출관리문제 ⑧ 환경조성조화문제(서가책상배치·전등·주위의 채색 등) ⑨ 개관시간과 司書敎師 근무시간 問題 등을 들 수 있겠으며 둘째로 讀書指導問題로는 ① 특별활동시간의 도서반의 指導問題 ② 圖書館利用指導問題 ③ 圖書선정 ④ 讀書術 ⑤ 讀書결과 처리 問題 등이 있겠다. 셋째로는 圖書館法에서 前述한 諸般 問題들을 해결할 行政的 뒷받침과 敎育公務員法에서 學校圖書館職員(司書敎師·學校司書=조무원에 대한 T/O, 進路, 대우問題 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참고해둘 것은 이상의 모든 問題點이 전적으로 當局에만 해당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絕對的으로 그렇다고만 수긍하기에는 또한 問題點이 있다고 본다. 勿論 當局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圖書館協會가 해야될 일도 있겠고 敎育者(학자·학교장 등)나 司書敎師가 硏究검토해야 될 점도 적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當局이 해결해야될 일과 협회나 敎育者가 해야 할 點은 저로선 言及하기 힘든 問題로 젖혀놓고 司書敎師가 해야될 극히 적은 일부분만 言及하겠다.

言及 前에 분명히 생각해둘 것은 圖書館에 關한 諸般政策이 당장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아무런 보장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란 확증도 또한 전혀 없다. 언젠가는 달라져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이나마 圖書館人이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시정책에 관한 준비는 當局이 아니라 圖書館人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特히 學校圖書館에 關한 諸般 問題의 시정할 점도 다른 圖書館人이 아니고 司書敎師의 손에서 硏究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 뜻에서 圖書館法이 公布된(1963年 公布) 이후 1964年부터 1974年까지의 도협월보에 寄稿된 學校圖書館에 關係된 論文과 當局에 建議했던 建議文을 별지와 같이 발췌하여 그 內容을 분석하면서 그 동안 우리들의 공통된 問題點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政策이 樹立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

먼저 學校圖書館에 關係된 論文을 아래 별표 1과 같이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64, 65, 66년까지는 연평균 16건인데 비해 67, 68, 70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3건 정도이다. 또한 주제별 통계에서는 별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圖書館 현황에 관한 것이 18건으로 압도적이고 가장 問題가 돼 왔던 도서비에 關係된 것은 불과 1건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뒤우침이 있으리라고 본다. 이것과 관계된 建議書 內容을 분석한 결과 불과 1回의 建議로 시행에 옮겨진 것이 있는가 하면 통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많은 회수(8회)를 차지하고 있는 奬學體系確立에 關한 것은 시행이 제대로 안됐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시 할 것은 學校圖書館에서 讀書指導의 임무가 큰데도 불구하고 讀書術이나 讀書法에 대한 論文은 한건도 없다.

또 한곳에 시선을 돌려 司書敎師의 進路問題를 보면 論文이 11건이며 建議書가 內容別 통계에서 2위를 차지하는 5回나 된다. 그러나 시행안된 것은 고사하고라도 當局의 回答조차도 한번 없다.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司書敎師資格規定이 결정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적인 대책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法條文化하기

전에 앞으로 司書敎師를 둔다면 이런 資格規定이라야 한다는 論文은 하나도 없다. 法條文化한 다음에야 뒤늦게 잘못됐다는 말뿐이며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한점이 바로 이점이 다만 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學校圖書館法을 시안한다고 한다면 제시한 諸般 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문헌을 어데서 참고 하겠는가? 또 허둥지둥 外國의 문헌을 뒤지다 보면 韓國的인 현실은 전혀 무시당하여 그 法도 公布되자마자 또 다시 問題투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問題에 關한 硏究를 누가해야 되겠는가? 當局이 해야 되겠는가? 協會나 學者가 해야 되겠는가? 지금까지의 論文을 보더라도 學校圖書館에 대한 것은 現職司書敎師外에 다른 분은 불과 몇분이었다.

그래서 본인은 學校圖書館에 關한 여건이 이런 상태에서 영원히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형편이더라도 司書敎師들이 꾸준한 硏究를 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一年에 단 한번이라도 그것도 各市·道別로 혹은 各分野別로 맡아서 발표회를 가지는 것이 學校圖書館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의 첫 발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의 論文과 問題視 돼왔던 建議書를 발췌 분석 提供하는 바이다.

끝으로 本人이 생각한 금년의 建議案을 제시하면

(1) 별표에 나타난 建議書의 回答도 없었고 또 시행될 수 없었던 理由를 분석해 준다면 앞으로 학교도서관 政策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과

(2) 최소한 一年에 한번정도(大會를 제의하고)라도 學校圖書館部會에서 연구발표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도서관협회에 建議하는 바이다.

〔별표 1〕 **논문주제의 연도별 통계**(도협월보)

연 도 별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계	비 고
건 수	17	15	16	7	7	2	6	4	2	4	4	84	

〔표별 2〕 **논문주제별 통계**(도협월보)

구분	도서관운영및관리								독서지도				기타		
주제별	운영 및 관리	도서관현황	자료정리	참고업무	교육과정과의 관계	사서교사문제	도서비관계	도서관학교장 강습	도서관이용지도	독서지도문제	도서선정문제	독서술(독서법)	도서관법관계	장학지도관계	계
건수	15	18	5	2	3	11	1	1	6	11	5		3	3	84

〔별표 3〕 **建議書內容의 분석통계**(도협월보)

區 分	圖書館法關係			司書敎師關係					其 他			合 計
내 용	圖書館法施行令에 관한 것	圖書館法改正要望	장서폐기기준에 관한 法제정	司書敎師T·O配定要望	司書敎師養成에 관한 강습관계	改正要望(사서교사 진로문제) 敎育公務員法 및 同法報酬規定	줄여줄 것 圖書館擔當敎師의 授業時間을	으로 認定할 것 司書敎師講習을 經歷평정講習	奬學體系確立	도서비(자율적경비) 증액할 것	실시토록 할 것 自由學習의 날에 圖書館敎育을	
회 수	3	1	1	3	1	5	1	1	8	5	1	30
시행여부	0			0	0		0					

學校圖書館에 關係된 論文抜取

번호	제 목	저 자	자 료	면 수
1.	學校圖書館의 奬學活動	金 斗 弘	도협월보 '64. 1. 2月號	p. 20～23
2.	教育方法의 改善과 學校圖書館	趙 載 厚	도협월보 〃 3月號	p. 2～ 5
3.	學校圖書館奬學指導計劃	金 斗 弘	도협월보 〃 〃	p. 6～ 7
4.	學校圖書館 심포지움			
	1) 學校圖書館의 教育的 役割	鄭 泰 時	도협월보 〃 4月號	p. 14～16
	2) 學校圖書館과 教育方法의 改善	金 鍾 喆	도협월보 〃 〃	p. 16～19
	3) 資料센타로서의 學校圖書館	李 鳳 順	도협월보 〃 〃	p. 19～21
5.	學校圖書館發展의 問題點(施行令에 要望되는 基準과 司書教師 問題를 中心으로)	崔 根 滿	도협월보 〃 〃	p. 26～32
6.	우리 나라의 學校圖書館 現況		도협월보 〃 〃	p. 122～123
7.	學校圖書館資料의 諸問題(도서구입비문제)	李 珪 範	도협월보 〃 5月號	p. 14～23
8.	美國의 司書教師教育計劃(上)(1900～1944)	Mary Alice Lohrer 저 金 京 一역	도협월보 〃 6月號	p. 18～24
9.	美國의 司書教師教育計劃(中)	Mary Alice Lohrer 저 金 京 一역	도협월보 '64. 7. 8月號	p. 18～25
10.	내가 처음 始作한 學校圖書館	朴敬源 秋月映	도협월보 '64. 7. 8月號	p. 26—30
11.	司書教師講習會		도협월보 〃 〃	p. 38～44
12.	美國의 司書教師養成計劃(下)	Mary Alice Lohrer 저 金 敬 一역	도협월보 〃 9月號	p. 23～31
13.	學校圖書館大會 會議錄(64. 9. 25—26)		도협월보 〃11月號	p. 20—23
	1) 道規模教育委員會의 學校圖書館 奬學指導	金 斗 弘	도협월보 〃 〃	p. 24～28
	2) 讀書指導가 學校教育에 미치는 影響	權 瀅 遠	도협월보 〃 〃	p. 29～33
	3) 教育公務員法에 있어서의 司書教師의 資格基準의 問題點	金 鍾 僖	도협월보 〃 〃	p. 34～35
14.	1964年의 學校圖書館	金 斗 弘	도협월보 〃12月號	p. 9～12
15.	學校圖書館의 P.R.問題	崔 根 滿	도협월보 〃 〃	p. 16～17
16.	鄕土資料의 蒐集整理小考(學校圖書館에 있어서)	河 龍 泰	도협월보 '64. 12月號	p. 18～20
17.	第三回全國學校圖書館大會現況報告		도협월보 〃 〃	p. 23～58
18.	圖書館法施行令(全文)		도협월보 '65. 3月號	p. 2～ 4
19.	學校圖書館參考業務의 効果的인 方法	張 琯 鎭	도협월보 〃 5月號	p. 13～17
20.	國民學校圖書館教育	柳 在 植	도협월보 〃 〃	p. 18～20
21.	全州高等學校圖書館	崔 渡 喆	도협월보 〃 6月號	p. 11～13
22.	全國學校圖書館現況報告		도협월보 〃 〃	p. 15～30
23.	五賢中・高等學校圖書館(도서분류표, 도서기호표 참고)	高 奉 湜	도협월보 〃7, 8月號	p. 17～18
24.	1965年度 司書教師講習		도협월보 〃 〃	p. 26—28
25.	馬山中學校圖書館	文 璣 榮	도협월보 〃 9月號	p. 15～17
26.	圖書館人이 본 司書教師와 讀書	尹 載 遠	도협월보 〃10月號	p. 11～14
27.	兒童圖書選定의 諸問題	李 康 壽	도협월보 〃11月號	p. 14～19
28.	龍山中・高等學校圖書館	洪	도협월보 '65. 11月號	p. 20～22
29.	1965年度 學校圖書館의 回顧	崔 根 滿	도협월보 〃12月號	p. 11～13
30.	司書教師의 專門性	金 京 一	도협월보 〃 〃	p. 16～20
31.	教育大學에 있어서의 圖書館教育(學校書館運營教授要因(1, 2學年)	元 鍾 麟	도협월보 〃 〃	p. 21～27
32.	學校圖書館에 있어서의 國語學習과 讀書指導方案(中學校國語學習을 돕는 讀書 指導用作家와 作品目錄을 中心으로)	林 明 玉	도협월보 〃 〃	p. 28～31
33.	國語教育과 學校圖書館	李 鍾 錄	도협월보 '66. 1, 2月號	p. 28～31

34.	麗水東國民學校圖書館	郭 眞 鎔	도협월보 〃 〃	p. 32~35
35.	圖書館法施行規則		도협월보 〃 3月號	p. 2~ 5
36.	鄕土學校와 學校圖書館	郭 眞 鎔	도협월보 〃 〃	p. 19~21
37.	어린이 도서관의 문제점	김 효 정	도협월보 〃 〃	p. 22~25
38.	圖書館學習의 基礎的技能으로서의 노오트하는 법과 書目 만드는 법	金 斗 弘	도협월보 〃 4月號	p. 12~13
39.	慶南敎委의 66年度 學校圖書館 育成計劃	慶 南 敎 委	도협월보 '66. 5月號	p. 31~34
40.	學校圖書館이 兒童敎育에 미치는 영향	李 康 壽	도협월보 〃 6月號	p. 6~10
41.	學校圖書館의 圖書配架	金 斗 弘	도협월보 〃 〃	p. 27~30
42.	學校圖書館運動의 現在와 進路(司書敎師의 進路問題)	李 珪 範	도협월보 〃 7,8月號	p. 28~32
43.	學校圖書館의 圖書紹介活動	金 斗 弘	도협월보 〃 〃	p. 39~42
44.	學校圖書館의 閱覽奉仕	金 斗 弘	도협월보 〃 9月號	p. 9~16
45.	國民學校兒童의 讀書指導와 그의 問題點	宋 永 守	도협월보 〃 10月號	p. 10~19
46.	國民學校에 있어서의 讀書指導計劃	郭 眞 鎔	도협월보 〃 10月號	p. 20~26
47.	學校圖書館用主題名標目表의 편찬을 제언함	趙 基 弘	도협월보 〃 〃	p. 27~30
48.	學校圖書館의 參考業務	金 斗 弘	도협월보 〃 11月號	p. 18~19
49.	雜誌의 整理(學校圖書館을 中心으로)	趙 基 弘	도협월보 '67. 1, 2月號	p. 37~40
50.	讀書力指導는 學力向上의 밑거름이 되었다(讀書力不振兒 "鍾植"이의 圖書館 利用指導實踐記)	金 完 起	도협월보 〃 5月號	p. 2~ 5
51.	學校圖書館基準(1967年) 1) 學校圖書館의 目的 2) 學校圖書館의 職員 3) 學校圖書館의 資料 4) 學校圖書館의 施設 5) 學校圖書館의 經費 6) 學校圖書館의 運營 7) 學校圖書館의 敎育	한 국 도 서 관 협 회	도협월보 〃 6月號	p. 7~10
52.	새로운 讀書指導의 方向	趙 載 厚	도협월보 〃 7,8月號	p. 8~11
53.	中·高等學校 圖書館敎育課程의 構成과 그 展開	鄭 義 順	도협월보 〃 9月號	p. 2~12
54.	學校圖書館에 있어서의 視聽覺資料의 整理	趙 基 弘	도협월보 〃 11月號	p. 5~10
55.	中學校에 있어서의 學校圖書館 利用指導의 效果的인 方案	權 瀅 遠	도협월보 '67. 12月號	p. 26~38
56.	文敎部의 劃企的 措置로 33名의 司書敎師定員配定		도협월보 '68. 1, 2月號	p. 13
57.	第11回全國敎育硏究大會學校圖書館分科硏究發會參觀記	金 京 一	도협월보 〃 〃	p. 21~25
58.	中·高等學校長 세미나計劃		도협월보 〃 3月號	p. 27
59.	學校圖書館 管理事務의 合理化	金 京 一	도협월보 〃 5月號	p. 12~15
60.	圖書館資料의 選擇, 購入, 整理에 있어서의 學校間의 協同問題	趙 基 弘	도협월보 〃 6月號	p. 9~13
61.	漫畵가 兒童의 讀書活動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1)	柳 在 植	도협월보 〃 11月號	p. 2~ 8
62.	漫畵가 兒童의 讀書活動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2)	柳 在 植	도협월보 〃 12月號	p. 11~18
63.	1968年度의 學校圖書館界	趙 載 厚	도협월보 '69. 1, 2月號	p. 28~32
64.	1969年度의 學校圖書館界	朴 致 旭	도협월보 〃 12月號	p. 12~15
65.	學校圖書館行政의 問題點에 관한 考察	金 斗 弘	도협월보 '70. 2月號	p. 2~ 8
66.	현대교육 사조와 산 학교도서관	유 인 종	도협월보 〃 8月號	p. 2~ 4
67.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개선의 필요성	趙 載 厚	도협월보 〃 〃	p. 5~ 8
68.	자율학습을 돕는 학교도서관운영	윤 영 길	도협월보 〃 〃	p. 9~14

69.	민주적 시민성 양성을 위한 독서지도	조 기 홍	도협월보	〃 9月號	p. 8~12
70.	學校圖書館을 위한 저자기호법의 연구	이 재 철	도협월보	〃12月號	p. 13~15
71.	학교도서관의 사서직의 자질문제	원 종 린	도협월보	'71. 10月號	p. 17~18
72.	사서직의 신분인사문제	趙 載 厚	도협월보	〃10月號	p. 18~19
73	학교도서관을 통한 학생의 독서습관화	金 斗 弘	도협월보	〃11月號	p. 6~ 9
74	학교도서관의 오늘과 내일	권 양 원	도협월보	〃12月號	p. 11~15
75	학교도서관을 통한 새마을교육 전개계획에 대하여	윤 영 길	도협월보	'72. 4月號	p. 11~15
76	교과서 개편에 따르는 도서관 이용지도 문제	趙 載 厚	도협월보	'72. 10月號	p. 20~21
77	학교도서관 관계법규의 문제점	金 斗 弘	도협월보	'73. 1月號	p. 17~19
78	中等學校平準化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問題點	玄 源 明	도협월보	〃10月號	p. 2~ 5
79	새마을교육과 학교도서관	최 태 정	도협월보	〃11月號	p. 16~19
80	學校圖書館의 回顧와 展望	李 正 熙	도협월보	〃12月號	p. 13~15
81	地區協議會, 部會, 協議會의 活動現況과 計劃(學校圖書館部會)	李 正 熙	도협월보	'74. 5月號	p. 14~15
82	各市·道別 學校圖書館運營實態와 問題點				
	1)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玄 源 明	도협월보	〃 8月號	p. 2~ 6
	2) 충청남도의 학교도서관	權 濬 遠	도협월보	〃 〃	p. 6~10
	3) 전라북도의 학교도서관	田 俊 燮	도협월보	〃 〃	p. 10~13
	4) 전라남도의 학교도서관	최 태 정	도협월보	〃 〃	p. 13~18
83	學校圖書館 운영상의 諸般問題分析	소 시 중	도협월보	〃 〃	p. 19~23
84.	학교도서관 회고와 전망	徐 章 錫	도협월보	〃12月號	p. 7~12

學校圖書館에 關한 建議書와 當局의 見解

1. 1964年度(도협월보 '64. 1, 2月號, p. 3~4, 4月號, p. 33~34))
   (1) 建 議 日 : 1964. 1. 24
   (2) 當局의回答日 : 1964. 4. 17

建議事項	答辯事項
1. 圖書館法의 施行令을 早速히 制定해주실 것.	1. 圖書館法 施行令案을 草案 完了하여 內部節次를 밟고 있는 중임
2. 學校圖書館, 公共圖書館 運營指導를 담당할 部署를 文敎行政機構內에 設定하고 專門職으로서의 담당관을 이에 配置해 주실 것	2. 政府의 方針으로서 機構擴張은 不許하고 있으며 專門職 配置問題는 中央管署가 行政을 爲한 企劃管理인 만큼 전문직을 꼭 配置하여야 할것인지의 與否를 硏究할 것임
3. 司書敎師 養成을 爲한 敎育을 擴大强化하고 學校管理責任者 및 一般敎師再敎育 講習에서도 圖書館學講座를 必修하도록 해주실 것	3. 司書敎師 養成을 爲한 敎育擴大 强化는 65年度 計劃樹立에 參考하여 반영토록 努力하겠으며 學校管理責任者 및 一般敎師 再敎育講習에서도 圖書館講座를 必修토록 要請한 것은 現在 實施하고 있는 敎育課程指針에 圖書館管理에 對한 內容이 포함되어 있음
4. 장서폐기 준칙을 制定하여 주실 것	4. 公共圖書館의 수가 극소하고 장서가 보잘것 없는 우리 나라 사정에 비추어 당분간 各圖書館 自體에서 愼重히 다루어 주시기 바람
5. 中·高等學校 自律經費에 月 20원 程度의 圖書費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行政措置를 要望함	5. 學校圖書館運營費(人件費, 物件費)는 原則的으로 設立者가 부담하여야할 것이나 現在 學校圖書館의 人的, 物的, 施設이 너무나 貧弱하기 때문에 一部를 學生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政府施策에 依하여 修業料引上 還元措置를 取한 此際에 學父兄의 부담을 加重시키는 圖書費 增額은 現段階로는 考慮될 수 없음

6. 敎育委員會 職制中 學校圖書館 指導監督에 關한 事務分掌 所管事項을 文藝體育課에서 初中等敎育課 所管으로 改定하여 주실 것.	6. 學校圖書館 指導 監督에 關한 事項을 學務局 所管으로 規定하는 것에 關하여는 當部에서도 예의 檢討中에 있음.

2. 1964年度(도협월보 '64. 4月號 p. 14 도협월보 '64. 6月號 p. 34~36)

(1) 建 議 日 : 1964年 4月 日

(2) 當局의回答日 : 1964年 6月 日

建 議 事 項	答 辯 事 項
1. 圖書館法 施行令을 早速히 公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협월보 1964年 4月號 p. 33 答辯事項 第1을 參照하시앞.
2. 圖書館運營費(圖書費)를 增額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협월보 4月號 p. 33 답변 第5을 參照 하시앞.
3. 敎育公務員法 및 同法 報酬規程 改定要望 敎育公務員法 資格基準에 司書敎師는 上級職으로 昇進할 수 없고 實技敎師와 같은 位置에 있으며 初任號俸이 一般敎師와 差異가 있음은 圖書館法 第25條에 規定된 國民校以上學校에 義務的으로 設置된 目的達成에 支障이 있을것 같으니 是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3. 司書敎師도 一般敎師와 同一하게 昇給할 수 있으며 國民學校나 中高等學校나 司書敎師의 技能이 同一하여 區別할 必要가 없으며 司書敎師 初任號俸은 實技敎師 養護敎師보다 높고 中學校 二級正敎師와 同一함으로 司書敎師의 待遇는 疎忽히 되지 않았음.
4. 文敎部, 市, 道敎育委員會 市. 郡 敎育廳에 圖書館 奬學體系를 確立해주시기 바랍니다.	4. 現在 各市道敎育廳學務局 初中等敎育課에서 學校圖書館指導에 關한 事務를 擔當하고 있으며 當部로서는 (奬學室所管)으로 學校圖書館 育成을 爲하여 重點的으로 努力하고 있음.
5. 司書敎師 T.O 配定을 要望합니다.	5. 國家財政形便上 專擔敎師의 配置는 期待할 수 없으므로 理職敎師 혹는 準敎師中 所定의 司書敎師 講習을 履修케하여 兼務토록하는 方法을 硏究하겠음. (文敎部長官)

3. 1964年度(도협월보 '64. 11月號 p. 2—3)

(1) 建 議 日 : : 1964. 9. 30

(2) 當局의 回答없음.

建 議 事 項	答 辯 事 項
1. 圖書館施行令을 조속히 制定하고 施行令(案)制定審議에 專門職을 參與시켜 주실것.	없 음
2. 學校圖書館 育成指導를 爲한 奬學系를 確立해 주실 것. 文敎行政機構內에 學校圖書館을 擔當할 機構를 設置해 주실 것.	
3. 中高等學校 自律經費中 圖書費를 學生 1人當 30원 以上 받을 수 있도록 措置하여 주실 것. 現在 中學校에서 月 5원, 高等學校 月 7원씩 받고 있는 圖書費로서는 年 4人當 책 1卷 꼴입니다. 이를 最少限 1人當 1冊程度는 購入할 수 있는 30원 以上을 割當하도록 措置있으시기 바랍니다.	
4. 學校圖書館 擔當敎師의 授業時間을 줄여 주실 것. 現在 學校圖書館을 擔當한 敎師도 다른 敎師와 똑같이 授業을 擔當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週當 15時間以下로 擔當토록 措置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65年度(도협월보 '65.7,8月號 p.2~3)

(1) 建　議　日 : 1965. 4. 30

(2) 當局의回答日 : 1965 .9. 1

建議事項및解決方案

建議 1. 文敎部에 圖書館 行政을 專擔할 수 있는 部署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解法方案〉

大部分의 外國에는 政府 機構內에 圖書館局 또는 圖書館課가 設置되어 있읍니다 우리 나라에도 圖書館事業의 重要性을 考慮하여 文敎部 社會敎育課에 圖書館 行政을 專擔할 수 있는 係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部 職制改正으로 可能하다고 思料됩니다.

建議 2. 司書敎師에 對한 敎育公務員法 및 同報酬規程을 改正하여 昇進할 수 있도록 措置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解決方案〉

現在 司書敎師는 特殊敎師로써 昇進의 길이 막혀있으므로 司書敎師도 一般敎師와 마찬가지로 1級司書敎師, 2級司書敎師로 區分하여 昇進의 길이 마련되도록 措置해 주시기 바랍니다.

1. 現敎育公務員法 別表 1의 司書敎師 資格基準

學校別 / 資格	中等學校	國民學校	特殊學校	幼稚園
司書敎師	1.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圖書館學科를 專攻하고 所定의 敎職課程을 履修한 者 2. 中等學校의 準敎師 以上의 資格證所持者로서 所定의 司書敎師 養成講習을 받은 자			

2. 改正案(同法)

資格	中等學校	國民學校
一級司書敎師	1. 中等學校 2級司書敎師의 資格證所持者로서 3年以上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所定의 再敎育講習을 받은者 2. 中等學校 正敎師資格證 所持者로서 3年以上의 敎育經歷을가지고 所定의 司書敎師 講習을 받은 者	1. 國民學校 2級司書敎師 資格證 所持者로서 3年以上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所定의 再敎育講習을 받은者 2. 國民學校 正敎師資格證 所持者로서 3年以上의敎育經歷을 가지고 所定의 司書敎師講習을 받은 者
二級司書敎師	1.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圖書館學科를 專攻하고 所定의 敎職課程을 履修한 者 2. 中等學校 準敎師資格證 所持者로서 2年以上의 敎育經歷을가지고 所定의 司書敎師講習을 받은 者	1.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圖書館學科를 專攻하고 所定의 敎職課程을 履修한 者로서 補修敎育을 받은者 2. 國民學校 準敎師資格證 所持者로서 2年以上의敎育經歷을 가지고 所定의 司書敎師講習을 받은 者

答辯事項

1. 文敎部社會敎育課에 圖書 館行政을 專擔할 수 있는 係 新設要請에 對하여는 國家緊縮財政 政策上 機構擴張을 抑制하고 있으므로 係 新設이 不可能합니다.

(總務處長官)

※ 7月1日 公翰에는 回答이 明示되어 있지 않으나 繼續하여 當局과 折衝中에 있으므로 回信이 오는 대로 알려 드리겠읍니다.

5. 1967年度(도협월보, '67. 7, 8月號 p. 2)

※ 回答없음

(1) 司書職員 및 司書敎師 T/O의 早速한 配定要望

國家의 財政形便上 一般公務員 및 敎員의 增員이 容易하지 않을 것으로 思料되오나 圖書館法 第16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公共圖書館에 配置하는 司書職員 및 學校圖書館에 配置하는 司書敎師의 T/O를 早速히 配定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法이 公布된지 이미 2年이 지났으나 T/O의 配定이 없어서 一線公共圖書館 및 學校圖書館(中·高校)의 運營에 많은 支障을 招來하고 있으며 따라서 社會敎育과 學校敎育의 發展에 큰 障碍가 되고 있읍니다.

(2) 奬學體系 確立要望

圖書館法 第25條 規定에 依하여 이미 設置되었거나 奬次 設置될 學校圖書館을 指導育成하고 敎育課程과 連關된 運營으로 學校敎育에 이바지 할 수 있는 奉仕가 이루어지도록 奬學指導가 要請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市道敎育委員會에 學校圖書館을 擔當할 奬學士(專門敎育을 履修하고 司書資格證을 所持한 者)를 配定하여 奬學體系를 確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1968年度(도협월보 '68. 7, 8月號 p. 2~3)

※ 回答없음

(1) 敎育公務員法의 司書敎師資格基準과 敎育公務員報酬規定의 改定

가. 敎育公務員法 第3條 資格基準 別表 1의 司書敎師의 資格基準을 다음과 같이 1, 2級으로 區分하고 中等學校와 國民學校別로 定할것.

區分	中等學校	國民學校	특수학교	유치원
司書敎師(一級)	1. 중등 정교사(2급)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사서교사양성 강습을 받은자 2. 중등학교 사서교사(2급)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 강습을 받은자	1. 국민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사서교사양성 강습을 받은자 2. 국민학교 사서교사(2급)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 강습을 받은자		
司書敎師(二級)	1. 중등학교 준교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자 2.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1. 국민학교 준교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2년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사서교사양성 강습을 받은자 2.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現行司書敎師資格基準은 敎育公務員法 第3條 別表

나. 敎育公務員報酬規程 別表(3) 主歷年數加減表를 1, 2級 司書敎師는 1, 2級正敎師와 同一하게 改定할것.

學歷別 \ 職名別		師大卒業	大學卒業	中等學校準敎師檢定
中等學校	교장·교감·교도교사·정교사(1급)·사서교사(1급)	3	4	5
	정교사(2급)사서교사(2급)	0	1	2
	준 교 사	0	△2	△1
국민학교	교장·교감·정교사(1급)사 서 교 사(1급)	△2	△1	0
	정 교 사(2급)·사 서 교 사(2급)	△5	△4	△3

다. 改定理由

① 국민학교 사서교사자격기준설정의 理由

㉠ 圖書館法 第25條에 의하여 國民學校에도 圖書館(室)을 設置하도록 되어 있으며

㉡ 同法 第6條에 規定된 바에 의하여 圖書館法施行令 第6條 第1項에서 "國民學校에는 1人以上의 司書敎師나 1人이상의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敎師를 둔다"라고 規定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 國民學校의 司書敎師確保問題는 緊要한 바이나 中等學校 準敎師資格證 이상의 所持者만이 司書敎師資格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現行法으로는 國民學校司書敎師確保가 不可能함

② 中等學校·國民學校 司書敎師資格基準을 1級과 2級으로 區分하여야되는 理由

㉠ 司書敎師의 基本的인 要件이 敎師로서 資格을 갖춘者로서 學校圖書館에 관한 專門的인 素養을 가진者라야하며

㉡ 司書敎師의 實質的인 敎育活動이 一般敎師의 活動보다도 廣範圍함에도 不拘하고 一般敎師가 司書敎師로서의 專門的인 再敎育을 받은 까닭에 資格面에서 格下되는 矛盾을 나타내고 있다.

㉢ 一般敎師가 再敎育을 통하여 1級正敎師資格證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어떠한 敎職分野보다도 不斷한 硏修가 더욱 必要한 司書敎師도 再敎育을 통하여 1級司書敎師資格證을 받을 수 있는 基準이 마땅히 마련되어야할 것임

㉣ 學校圖書館實務經驗이 많고 有能한 有資格圖書館擔當敎師는 1級正敎師이므로 司書敎師로 任命 받으면 2級正敎師와 같은 號俸을 받게 되어 任命을 忌避하고 있는 實情임

(2) 司書敎師 T/O增配要望

文敎部는 2月 26日부로 33名의 司書敎師를 配定한바 있으나 圖書館法施行令 第6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學生數 1,200名이하인때는 1人의 司書敎師를, 學生數 1,200人이상인때는 2人이상의 司書敎師를 두어야 한다는 趣旨에 따르려면 그것은 너무나 末及한 數字입니다.

司書敎師 T/O配定問題는 各級學校圖書館의 運營의 難點中 무엇 보다도 가장 時急히 解決되어야 할 問題입니다

〈註 : 紙面關係로 70年度(도협월보 '70. 7月號 p. 12, 도협월보 '70. 11月號. p. 15) 71月度(도협월보 '71. 10月號 p. 20~22) 建議事項을 省略함.〉